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개정한 바('25.8.1. 시행 예정)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 삭제(제24조제1항 삭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하며, 이에 따라 조문제목을 종전의 제2항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가서의 반납'으로 수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인가의 취소 등)”을“(인가서의 반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제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24조”를 “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26조 중 “제24조제1항”을 “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인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4조(인가서의 반납) <삭 제>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자는 인가서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5항----- --.
제25조(불법감청설비의 폐기) 감청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제24조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인가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감청설비의 제조·판매·사용 등의 중지, 폐기,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	제25조(불법감청설비의 폐기) -- ----- 법 제10 조제5항----- ----- ----- ----- ----- -----

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6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u>제24조제1항</u> 에 따라 인 가를 취소하거나 법 제10조의5 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 ---- <u>법 제10조제5항</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연 락 처	(044) 202 - 4951